

제정일	2021.05.11
개정일	2021.05.11
문서 관리부서	영업지원팀

(주)동명바이브로 공정거래 운영 규정

2021.05.11

제 1(목적)

본 규정은 (주)동명바이브로의 공정거래 운영에 의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무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세부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한다.

제 3(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 4(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4.1 선임과 해임

-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 2)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직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
- 3)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로서의 역할

제 5(임직원의 의무)

5.1 공정거래의 준수 임직원은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시장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임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활동에 임해야 한다.

5.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1) 회사와 임직원은 다른 사업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

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 조작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합 등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5.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1)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거래처 또는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 2)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회사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아니한다.
- 3)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 경쟁사업자로부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5) 거래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거래하거나 기술의 부당이용이나 거래처 이전 방해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6)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6(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6.1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보완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배포/보완하여야 한다.

6.2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활동상황 평가 실시 및 보고

-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점검계획은 매년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 3)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점검실시 결과(개선조치 포함)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연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6.4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정요구 : 자체점검 실시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의, 경고, 재교육 :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나 법 위반 정도가 미약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주의, 경고 또는 재교육조치를 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상습적인 위반행위 또는 법 위반 정도가 커서 회사에게 심각한 명예 실추 및 금전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인사위원회에 임직원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수준을 정하고 징계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한다.

6.5 사내 불공정거래행위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관련법령이나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및 지침에 위반 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지원부서(법무팀, 윤리경영팀)에게 이를 제보할 수 있다.

2) 임직원의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책임 하에 공정 거래 지원부서에서 실시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는 동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의 중요사항을 본 규정 6.3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상기조항에 의해 제보를 한 임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6.6 포상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평가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제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 7(기타)

7.1 운영상황의 공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필요시 증권거래소에 자율 공시를 할 수 있다.

1) CEO 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

2)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지원부서의 현황

7.2 운영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끝]